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0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이해민 · 이학영
황명선 · 황운하 · 박희승
손명수 · 정준호 · 조정식
서왕진 · 이수진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,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,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기구에서의 음주,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,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,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기구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·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·관리하도록 하고,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,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,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‘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·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’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,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, 제49조제2항).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의 제목 중 “설치·관리”를 “설치·관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교통사고”를 “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”로, “방호울타리”를 “방호울타리, 조명시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,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·관리 및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유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·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3(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<u>설치·관리</u>)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교통사고</u>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<u>방호울타리</u> 등 안전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19조의3(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<u>설치·관리 등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통사고 또는 안전사고</u> ----- ----- ----- <u>방호울타리, 조명시설</u>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②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,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 설치·관리 및 안전관리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(생략)	제49조(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	② ----- -----

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 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. 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<u>유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·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